

1. 개정이유

「지방세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행화 하고,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등의 증여일 경우 취득세 신고서상 시가표준액과 시가인정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하며, 폐업신고 관련 면허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확대 관련 위임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취득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서식 보완(안 제4조의3제3항, 제4조의6, 제12조의2, 별지 제3호서식)
- 나. 면허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위임 규정 신설(안 제13조 신설)
- 다. 담배소비세 공제·환급 간소화 절차 신설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서식 보완(안 제31조의2조, 안 별지 제31호의2서식)
- 라. 주민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서식 보완(안 제36조,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의2서식)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입법예고 전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4조제3항”을 “영 제14조제3항 및 제5항 단서”로 한다.

제4조의6 중 “제2항제2호다목”을 “제2항제3호”로 한다.

제12조의2 중 “영 제38조의3”을 “영 제38조의4”로 한다.

제13조를 제13조의2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비과세) 영 제40조제2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전년도 12월 31일 이전에 그 면허와 관련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해당 연도 1월 25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등을 기재하여 세무서장에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제31조의2 중 “영 제7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를 “영 제7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를 “영 제78조제1항제1호다목”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6”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의2서식 뒤쪽 제16항 중 “제63조제1항제2호”를 “제63조제1항제2호의 전단의 사유”로, “적습니다”를 “적고 제63조제1항제2호의 후단의 사유로 폐기하는 경우에는 빈칸으로 둡니다”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뒤쪽 제10항 중 “단서”를 “각 목”으로, “휴게실 또는”을 “휴게실),”로,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용”으로, “탄약고)”를 “탄약고”로 한다.

별지 제39호의2서식 제16항 중 “1년간만”을 “1년 동안(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달만 해당)”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2호 중 “전부터”를 “전부터(과거 1년 내에 사업소를 신설한 경우에는 신설한 달부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취득세 ([]기한 내 / []기한 후) 신고서

(앞쪽)

관리번호	접수 일자	처리기간	즉시
------	-------	------	----

신고인	취득자 (신고자)	성명(법인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 소유자	성명(법인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시가표준액 1억 이하 증여일 경우 선택	☐ 시가표준액 ☐ 시가인정액
--------------------------	---

매도자와의 관계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34호가목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 (배우자 [] 직계존비속 [] 그 밖의 친족관계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34호나목에 따른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임원·사용인 등)인 경우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34호다목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주주·출자자 등)인 경우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

취 득 물 건 내 역

소재지						
취득물건	취득일	면적	종류(지목/차종)	용도	취득 원인	취득가액

세목		과세표준액	세율	① 산출 세액	② 감면 세액	③ 기납부 세액	가산세		신고세액 합 계 (①-②-③+④)
합계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납부지연	계 ④
신고 세액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부과분	%						
		감면분	%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1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접수(영수)일자 (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또는 법인 장부 등 취득가액 및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3.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4.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 6.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위임장

위의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취득세 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는 사람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르는 선

접수증(취득세 신고서)			
신고인(대리인)	취득물건 신고내용	접수 일자	접수번호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1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란은 과세관청에서 적는 사항이므로 신고인은 적지 않습니다.
2. “기한 내 신고”란에는 취득일(잔금지급일 등)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표기[√]하고, “기한 후 신고”란은 기한 내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고하는 경우에 표기[√]합니다.
3. “신고인”란에는 납세의무자를 적고, “전 소유자”란에는 취득하는 과세대상인 부동산(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의 전 소유자를 적습니다.
4. 매도자와의 관계는 반드시 적어야 하며, 사실과 달리 적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등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5. “취득물건 내역”란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의 내역 등을 적습니다.
 - 가. “소재지”란은 부동산(토지·건축물)은 토지·건축물의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골프회원권은 골프장 소재지, 차량(기계장비)은 등록지 등을 적습니다.
 - 나. “취득물건”란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토지·건축물),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어업권, 광업권,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을 물건별로 적습니다.
 - 다. “취득일자”란에는 잔금지급일(잔금지급일 전에 등기·등록 또는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에 해당하는 취득일자를 말합니다) 등을 적습니다.
 - 라. “면적”란에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분의 경우 ○○분의 ○)으로, 차량의 경우에는 ○○cc·적재정량으로, 선박의 경우에는 ○○톤으로, 어업권의 경우에는 어업권 설정 면적 등을 적습니다.
 - 마. “종류(차종)”란에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주거용·영업용·주상복합용 등 사용형태를 적고, 차량(항공기)의 경우에는 차종(항공기 종류)·연식 및 차량번호(항공기는 제외합니다)를 적으며,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종류 및 구조를 적고, 골프회원권의 경우에는 회원의 종류인 법인·개인 등을 적습니다.
 - 바. “용도”란에는 취득한 물건의 사용용도(주거용, 상업용, 공장용, 자가용, 영업용, 법인용, 개인용 등)를 적습니다.
 - 사. “취득원인”란에는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매매로, 상속 또는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로 각각 적으며, 소유권 보존(신축 등)으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 등을 적습니다.
 - 아. “취득가액”란에는 취득당시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서 또는 취득에 소요된 사실상 비용(법인의 경우 장부가액 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과 일치해야 합니다.

※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매매계약서(부동산점인계약서 등)를 이종으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취득가액을 허위·과소 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세율”란에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되,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과세율을 적습니다.
7. “산출세액”란에는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적습니다.
8. “감면세액”란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따라 지방세가 감면되는 대상을 말하며 해당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9. “기납부세액”란에는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변동, 경감취소 등으로 과소납부한 세액 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등으로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10. “가산세”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의 금액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금액과 그 합계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57조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신고세액 합계”란에는 신고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①-②-③+④)을 적습니다.
12. “농어촌특별세신고세액”란에는 취득세와 동시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말하는 것으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고, “지방교육세 신고세액”란에는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13. 첨부 서류
 -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는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 나.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은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 다.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는 비과세 또는 감면된 취득세가 있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 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은 세대 분리 등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첨부합니다.
 - 마.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다를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14. 신고인을 대리하여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5. 신고인은 납세의무자를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16. 신고인은 반드시 접수증을 수령해야 하고, 접수증의 간인 및 접수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17. 주택을 무상 또는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 상세명세서(부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무상 / []유상거래) 취득 상세 명세서

① 주택 (증여자[] / 취득자[]) 세대 현황

① 취득자 구분	☐ 개인 ☐ 법인 또는 단체				
② 세대 현황	구 분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1세대 포함 여부
※ 무상취득은 증여자 기준으로, 유상거래는 취득자 기준으로 적습니다.	세대주				☐ 포함 ☐ 제외
					☐ 포함 ☐ 제외
	세대원				☐ 포함 ☐ 제외
					☐ 포함 ☐ 제외

② 신규 취득 주택 현황

③ 취득 주택 소재지 및 고급주택 여부			주 소					
			조정대상지역	☐ 여 ☐ 부	고급주택		☐ 여 ☐ 부	
④ 종과세 제외 주택 여부			☐ 해당 없음	☐ 해당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제()호의 주택)				
⑤ 취득 원인			☐ 무상취득 / 유상거래 (☐ 매매 ☐ 분양권에 의한 취득)					
⑥ 계약일					⑦ 취득일			
⑧ 취득 가격								
⑨ 취득주택 면적(㎡)	총면적	토 지	취득지분	%	취득면적	토 지		
		건 물		%		건 물		
⑩ 일시적 2주택 여부			☐ 일시적 2주택 ☐ 해당 없음					

③ 1세대 소유주택 현황 ※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합니다.

⑪ 1세대 소유주택 현황	소유주택 수		☐ 1주택 ☐ 일시적 2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 이상				
	소유주택 현황 ※ 기재사항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 성할 수 있 습니다.	유 형		소유자	소재지 주소	취득일	주택 수 산정 포함 여부*
		단독·공동주택					☐ 포함 ☐ 제외
		'20.8.12. 이후 계약	주택 분양권				☐ 포함 ☐ 제외
			주거용 오피스텔				☐ 포함 ☐ 제외
		'20.8.12. 이후 취득	조합원 입주권				☐ 포함 ☐ 제외
							☐ 포함 ☐ 제외
							☐ 포함 ☐ 제외
							☐ 포함 ☐ 제외
							☐ 포함 ☐ 제외
					☐ 포함 ☐ 제외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 시 제외합니다.

④ 신규 주택 적용 취득세율

취득구분	종과세 제외 주택		무상취득		유상거래							
					법인 및 단체	개인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규제구분	무상 취득	유상 거래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	법 인 및 단 체	1주택 일시적 2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2주택 이하	3주택	4주택 이상
총 소유주택 수 (신규 주택 포함)			3억 이상	3억 미만			1주택 일시적 2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2주택 이하	3주택	4주택 이상
⑫ 취득세율	3.5%	1~3%	12%	3.5%		12%	1~3%	8%	12%	1~3%	8%	12%
	☐	☐	☐	☐		☐	☐	☐	☐	☐	☐	☐
고급주택			☐ ⑫ 취득세율에 8% 가산									

※ 향후 세대별 주택 수 확인 결과 신고내용과 다르거나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했으나 종전 주택을 기한 내에 처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① 취득자 구분”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 취득자가 개인인지 법인(「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을 말합니다)인지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2. “② 세대 현황”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신고 대상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 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합니다)으로 구성된 세대의 현황을 적습니다. 이 경우 다음 기준에 유의하여 적어야 합니다.
 - 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세대원란에 적어야 하는 대상
 - 1)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혼인했거나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다만, 미성년자가 아니면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녀는 제외합니다.
 - 2)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부모
 - 나.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1세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지 않아, 세대원란에는 적지만 1세대 포함 여부에는 제외하는 경우
 - 1)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합니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퍼센트 이상인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 2)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3. “③ 취득 주택 소재지 및 고급주택 여부”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주소와 조정대상지역 여부, 고급주택 여부를 적습니다.
4. “④ 종과세 제외 주택”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종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종과세 제외 주택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규정의 몇 호에 해당하는지를 적습니다.
5. “⑤ 취득 원인”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취득 원인이 무상취득 또는 유상거래(매매 또는 분양권에 의한 취득)인지를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6. “⑥ 계약일”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증여계약일, 매매계약일 또는 분양권 계약일을 적습니다.
7. “⑦ 취득일”란에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계약일을, 유상거래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부동산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적습니다.
8. “⑧ 취득 가격”란에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유상거래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구입가격을 적습니다.
9. “⑨ 취득주택 면적”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토지·건물의 총면적, 취득지분 및 취득면적을 적습니다.
10. “⑩ 일시적 2주택 여부”란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로서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신고 대상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과 신고 대상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란에 표기합니다.
11. “⑪ 1세대 소유주택 현황”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을 포함하여 신고 대상 주택 취득일 현재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단독·공동주택, 2020.8.12. 이후 계약한 주택분양권, 2020.8.12.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소유자, 소재지 주소와 취득일을 적습니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 포함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소유주택 현황을 별지로 작성할 경우 유형, 소유자, 소재지 주소, 취득일 및 주택 수 포함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12. “⑫ 취득세율”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종과세 제외 여부, 취득 원인, 소재지(조정 대상 지역 여부) 및 1세대 소유주택 수 등을 확인하여 해당 세율을 표기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3(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등) ①·② (생략)	제4조의3(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세심의위원회는 <u>영 제14조제3항</u> 에 따라 시가인정액에 대해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그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 <u>영 제14조제3항 및 제5항 단서</u>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4조의6(계약해제 신고) <u>영 제20조제1항제3호</u> 및 같은 조 <u>제2항제2호다목</u> 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계약해제신고서를 말한다.	제4조의6(계약해제 신고) ----- ----- <u>제2항제3호</u> ----- ----- -----.
제12조의2(부동산 증여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 <u>영 제38조의3</u> 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 통보서를 말한다.	제12조의2(부동산 증여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 <u>영 제38조의4</u> ----- ----- -----.
<u><신 설></u>	<u>제13조(비과세) 영 제40조제2항제4호</u> 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u>하는 경우”란 직전년도 12월 31일 이전에 그 면허와 관련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해당 연도 1월 25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등을 기재하여 세무서장에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u>
<u>제13조 (생략)</u> 제31조의2(담배의 폐기 신고) <u>영 제7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u>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담배 폐기 신고서 및 담배 폐기 확인서를 말한다. 제36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u>영 제78조제1항제1호 단</u> <u>선</u>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3. (생략)	<u>제13조의2 (현행 제13조와 같음)</u> 제31조의2(담배의 폐기 신고) <u>영 제7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u> <u>의</u> ----- ----- ----- -----. 제36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u>영 제78조제1항제1호다목</u> ----- ----- ----- -----. 1. ~ 3. (현행과 같음)